투자위험등급 4등급[보통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흥국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4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흥국고배당 TOP10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흥국고배당 TOP10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흥국고배당TOP1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흥국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hkfund.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26년 06월 24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6년 07월 29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흥국자산운용㈜ 본점(☎ 02-2122-2800, www.hkfund.co.kr)
   각 판매회사 영업점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기구 명칭 및 펀드코드(종류형 포함)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흥국고배당TOP1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EK895**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EK896
수수료선취-온라인(A-e)	EK89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EK900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EK90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펀드 등(C-f)	EK90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금전신탁(C-w)	EK90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EK904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EK90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EK906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EK907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EK908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EK909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r)	EK910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에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 보험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8.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9.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이 투자신탁이 최초설정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총회 또는 다른 방식의 투자자 동의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흥국멀티크레딧증권모투자신탁[채권]"의 자투자신탁으로 자동 전환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상세 목차

제 1부. 모집 및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 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 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 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제 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붙임] 용어풀이

[요약정보]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26.06.24)

흥국고배당TOP1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펀드코드: EK895)

투자위험등급: 4등급[보통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흥국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4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고, 40% 이하를 주식에 투자하여** 시장 상황의 변동에 따른 **이자율변동위험, 배당주형 펀드 투자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는 **흥국고배당TOP1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채권 등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 국공채, 우량 회사채(AA- 이상), 기업어음(A1 이상)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고, 국내 고배당주식에 투자하여 배당수익과 자본수익을 동시에 추구 합니다.

구분	편입자산	편입비중(예상)	목표
채권	국공채 우량회사채 (AA- 이상) 기업어음 (A1 이상)	60% 이상	안정적 이자수익 추구
주식	배당성장 기업 1) 이익증가 비례하여 배당 성장 2) 실적 증가 혹은 양호한 현금흐름 3)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소각 4) 투자사이클 종료 및 회수기 도래	40% 이하	기업가치 Re-Rating 배당+자본이익 동시 추구
	고배당 기업 배당수익을 꾸준히 창출하는 기업을 선별하여 배당이익 추구		

<세부 운용전략>
① 채권운용전략
- 국공채 및 우량회사채 위주 투자
• 국공채 및 우량회사채(AA- 이상)에 투자하여 보유수익률 제고
• 기업어음(A1 이상)에 투자
• 펀더멘탈 대비 금리 매력도가 높은 자산 위주로 편입
• 안정적 듀레이션 운용을 통해 펀드 수익률 변동성을 축소

- 전문적 신용위험 관리
• 전담 Credit Analyst의 상시 Monitoring으로 보수적인 투자 Universe관리
• 당사 개발한 HK Credit Grouping System 활용을 통한 정량적 분석 수행
• 투자종목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사전적 관리 및 선제적 대응

- 초과수익 추구
• 심층적인 종목 분석을 통해 신용등급 상향 예상 종목 선제적 투자
• 만기별 스프레드 분석을 통해 Rolling Effect 가 큰 구간 투자
• 동일 종목 내 만기별 스프레드 교체 투자, 동일 업종 내 종목간 스프레드 교체 투자전략 활용

② 주식운용전략
- Value-Up 프로그램에 따른 수혜기업에 투자
• 적정 수준 이상의 ROE와 주주환원율 보유한 기업 및 향후 개선 기업
• 효율적 자본 재배치 기업 / 기업가치 상승기반을 확보한 기업

- 주주 환원에 적극적인 기업에 투자
• 배당가능재원의 원천인 영업이익 증가 또는 양호한 현금흐름 보유한 기업
• 시장 평균 이상의 고배당 /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소각 대상 기업
• 일관성 있고 명확한 주주 환원 정책을 보유한 기업

- 고배당 TOP10 집중 투자
• 매년 높은 수준의 배당을 꾸준히 실시하는 상위 10개 우량기업에 집중 투자
• 특정 산업 / 특정 종목에 편중을 지양하는 분산 투자

투자가능 종목 스크리닝	▷ 시가총액 1천억원 이상 ▷ 20일 일평균 거래대금 15억 이상 ▷ 배당수익률 3% 이상
20개 기업 선별	▷ 배당수익률 ▷ 주주환원 지속가능성 ▷ 실적 안정성 ▷ 재무구조 우위 고려
최종 TOP10 기업 선별	▷ 시가총액 규모 ▷ 유동성 ▷ 배당수익률 ▷ 업종배분 고려

* 종목 리밸런싱 기간에는 종목 수가 일시적으로 초과, 미달될 수 있습니다. 상기 투자가능종목 스크리닝기준 등 세부 투자전략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KOBI(Korea Bond Index)120*60% + KOSPI고배당50*40%
-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채권에 주로 투자하므로, KOBI120 지수를 60% 비중으로 적용하고, 우량 중소형 종목 중심으로 높은 배당수익률을 추구하는 KOSPI고배당50 지수를 40% 비중으로 비교지수를 선정하였습니다.
- KOBI120 지수는 Index Fund의 합리적 운용 및 중기 성과평가를 위해 잔존 만기 3년 이하의 투자가능 채권 120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듀레이션은 1.0년 수준입니다.
- KOSPI고배당50 지수는 우량 중소형 종목 중심으로 높은 배당수익률을 추구하며, 개인투자자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는 지수로서, 유가증권시장 상장종목 중에서 배당수익률이 높은 50 종목을 선정하여 2014년 10월 27일부터 산출하고 있습니다. 지수산출은 배당수익률이 높은 순서로 편입비중이 결정되는 배당수익률 가중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시장상황,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 등에 따라 비교지수는 추가될 수 있으며,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혼합채권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단위: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단위: 천원)				
	판매 수수료	총보수	판매 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보수・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 -오프라인(A)	납입금액의 0.5% 이내	0.7320	0.4000	0.7700	0.7442	126	204	285	452	941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C)	없음	1.0320	0.7000	1.1500	1.0456	105	214	330	578	1,315
수수료선취 -온라인(A-e)	납입금액의 0.25% 이내	0.5320	0.2000	0.5600	0.5446	81	138	197	319	677
수수료미징구 -온라인(C-e)	없음	0.6820	0.3500	0.7300	0.6956	70	143	219	384	875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피투자펀드 보수・비용포함)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종류 A형과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9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9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32페이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추이 (연평균수익률, 단위: %)

클래스 종류	최초 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025/06/25 ~ 2026/06/24	-	-	-	

수수료선취 -오프라인(A)	2025.06.25	15.56	-	-	-	15.56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C)	2025.06.25	15.23	-	-	-	15.23
수수료선취 -온라인(A-e)	2025.06.25	15.80	-	-	-	15.80
수수료미징구 -온라인(C-e)	2025.06.25	15.62	-	-	-	15.62
비교지수	-	9.37	-	-	-	9.37
수익률 변동성	2025.06.25	9.07	-	-	-	9.15

주1) 비교지수: KOBI(Korea Bond Index)120*60% + KOSPI고배당50*40%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전문인력 (2026.06.30 기준)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연평균수익률 (혼합채권형, 단위:%)				운용경력 년수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박민경	1984	책임 (팀장)	25개	3,887억원	16.85	0.00	6.37	5.92	18년6개월
홍찬양	1982	부책임 (본부장)			4.19	4.58			13년10개월
조정남	1975	부책임 (팀장)	79개	133,790억원	16.85	0.00			23년

주1)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은 주식운용본부 및 채권운용본부가 담당(팀운용)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운용전문인력입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이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수 및 운용규모는 주식운용본부 및 채권운용본부 공·사모펀드 설정금액 기준(투자일임재산 제외) 입니다.

주4)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재간접형 유형인 경우 주식 및 채권 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를 포함)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5)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투자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시장 위험 및 개별 자산 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주식 및 채권 등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 등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주식 및 장내파생상품 등의 가격변동에 의해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 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하여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발행자의 신용등급이 낮아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지급하는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신용등급이 높은 채권에 비하여 이자율 변동 시 가격변동폭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유동성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투자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공모주 포함)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정 주식 집중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주식) 투자 시 10 개 종목을 선별하여 집중투자를 하기 때문에, 더 광범위하게 배당주를 분산 투자하는, 다른 채권혼합형 투자신탁상품에 비해 운용성과 변동의 폭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배당주형 펀드 투자 위험	배당주에 투자하는 펀드에는 여러 가지 잠재적인 위험이 존재합니다. 기업의 경영 실적 저하, 이익 감소, 또는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예상된 배당금이 축소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펀드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장성이 기대되는 기업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주가 하락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고배당을 유지하던 기업이 재무 건전성 약화나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해 배당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위험도 있습니다. 금리 상승 시 고배당주의 투자 매력도는 감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보다 안전한 자산으로 이동하면서 펀드의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울러, 일부 국내 주식의 낮은 유동성으로 인해 매매가 어려울 수 있으며, 특정 업종이나 기업에 집중된 투자는 해당 기업 또는 업종의 변동성이 펀드 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변경 위험	이 투자신탁이 최초설정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총회 또는 다른 방식의 투자자 동의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흥국멀티크레딧증권모투자신탁[채권]"의 자투자신탁으로 자동 전환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이내에 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중 처리방안을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되므로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매입방법	· **15시 30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 **15시 30분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환매방법**	· **15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4영업일(D+3)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 **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4영업일(D+3)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table>
<tr><td>기준가</td><td>
<table>
<tr><td>산정방법</td><td>-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td></tr>
<tr><td>공시장소</td><td>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hkfundcokr)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td></tr>
</table>
</td></tr>
<tr><td>과세</td><td>
<table>
<tr><th>구분</th><th>과세의 주요내용</th></tr>
<tr><td>집합투자기구</td><td>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u>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u>입니다.</td></tr>
<tr><td>수익자</td><td>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td></tr>
<tr><td>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td><td>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관련세법에 따라 과세하며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td></tr>
<tr><td>퇴직연금제도의 세제</td><td>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td></tr>
</table>
</td></tr>
<tr><td>전환절차 및 방법</td><td>해당사항 없음</td></tr>
<tr><td>집합투자업자</td><td>흥국자산운용㈜ 대표번호 : 02-2122-2800 / 인터넷 홈페이지 : wwwhkfundcokr</td></tr>
<tr><td>모집기간</td><td>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 모집,매출 총액 | 10조좌</td></tr>
<tr><td>효력발생일</td><td>2026년 07월 29일 | 존속기간 |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td></tr>
<tr><td>판매회사</td><td>집합투자업자(www.hkfund.co.kr)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td></tr>
<tr><td>참조</td><td>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50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집합투자기구의 종류</td><td>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table>
<tr><th colspan="2">종류(Class)</th><th>집합투자기구의 특징</th></tr>
<tr><td rowspan="3">판매 수수료</td><td>수수료선취 (A)</td><td>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9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1년9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수수료후취 (S)</td><td>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수수료미징구 (C)</td><td>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9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1년9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 rowspan="3">판매 경로</td><td>온라인 (e)</td><td>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td></tr>
<tr><td>오프라인</td><td>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td></tr>
<tr><td>온라인 슈퍼 (S)</td><td>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td></tr>
<tr><td>기타</td><td>기관, 펀드 등(F)</td><td>전문투자자, 기관투자자, 펀드, 고액투자자, 변액보험 용도 등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able>
</td></tr>
</table>

	랩, 금전신탁(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특정금전신탁계약 등을 통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 (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기타에 해당하는 클래스의 가입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집합투자규약 및 제2부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나. 종류별 가입자격'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 (www.hkfund.co.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hkfund.co.kr)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hkfund.co.kr)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흥국고배당TOP1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EK895**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EK896
수수료선취-온라인(A-e)	EK89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EK900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EK90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펀드 등(C-f)	EK90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금전신탁(C-w)	EK90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EK904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EK90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EK906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EK907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EK908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EK909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r)	EK910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혼합채권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X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0조좌

주1)모집(판매)기간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판매)은 가능합니다.

주2)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3)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운용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및 판매됩니다.

나.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hkfund.co.kr)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1)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흥국고배당TOP1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EK895**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EK896
수수료선취-온라인(A-e)	EK89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EK900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EK90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펀드 등(C-f)	EK90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금전신탁(C-w)	EK90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EK904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EK90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EK906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EK907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EK908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EK909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r)	EK910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시행일	변경 사항
2025.05.11	집합투자기구 최초 효력발생
2026.07.29	1) 집합투자기구 정기결산에 따른 정정 2) 채권평가회사 추가 3) 내부처리지침 반영 4)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추가(홍찬양) 5)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조항 보완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집합투자기구는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흥국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68(흥국생명빌딩 19층)

	(Tel 2122-2800, www.hkfund.co.kr)

주1)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2026.06.30 기준)

가. 운용전문인력

(단위: 개, 억원)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연평균수익률 (혼합채권형, 단위:%)				운용경력년수 및 이력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박민경	1984	책임 (팀장)	25	3,887	16.85	0.00	6.37	5.92	* 운용경력 : 18년 6개월 - 07.12~24.12 : 신영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 24.12~현재 : 흥국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홍찬양	1982	부책임 (본부장)			4.19	4.58			* 운용경력 : 13년 10개월 - 12.08~15.08 : 동양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 16.01~18.03 : BNK 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 18.03~20.07 : 키움투자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 21.05~23.03 : HDC 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 23.04~현재 : 흥국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조정남	1975	부책임 (팀장)	79	133,790	16.85	0.00			* 운용경력 : 23년 - 98.11~05.06 : 한국투자증권 리테일채권부 - 05.06~11.06 : 한국투자신탁운용 Fixed Income 운용본부 - 11.07~17.06 : 삼성화재해상보험 일반계정운용파트 - 17.08~현재 : 흥국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

주1)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은 주식운용본부 및 채권운용본부가 담당(팀운용)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운용전문인력입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이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상기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수 및 운용규모는 주식운용본부 및 채권운용본부 공·사모펀드 설정금액 기준(투자일임재산 제외) 입니다.

주4)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운용 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운용규모 : 해당사항 없음

주5)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재간접형 유형인 경우 주식 및 채권 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를 포함)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6)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이며, '이력'은 운용전문인력의 과거 10년간 주요 이력입니다.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① 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 2025.06.25 주식운용본부 박민경(1984) 책임운용전문인력 신규

②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 2025.06.25 채권운용본부 조정남(1975)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신규
- 2026.07.29 주식운용본부 홍찬양(1982)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신규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혼합채권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나. 종류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선취 (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9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1년9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후취 (S)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미징구 (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9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1년9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 (S)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기관, 펀드 등(F)	전문투자자, 기관투자자, 펀드, 고액투자자, 변액보험 용도 등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 금전신탁(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특정금전신탁계약 등을 통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 (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기타에 해당하는 클래스의 가입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집합투자규약 및 제2부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나. 종류별 가입자격'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채권 등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투 자 대 상	투 자 비 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채 권 등	60% 이상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A- 이상이어야 하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1 이상이어야 한다),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다만,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1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채권등"이라 한다)
주 식	40% 이하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이하 "주식"이라 한다)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어 음 등	40% 이하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1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등"이라 한다)

집합투자증권등	4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증권총액의 50% 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
증권의 대여	증권총액의 50% 이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투자증권의 대여
증권의 차입	20% 이하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법 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 제18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④및 ⑤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 예외 기간을 15일 이내로 합니다.

①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
②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③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④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⑤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집합투자규약 제18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규약 제18조제6호 내지 제9호, 제19조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①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②투자신탁 일부해지
③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④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⑤그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집합투자규약 제19조제2호, 제4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신용등급이 집합투자규약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주1) 증권의 대여 :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증권의 대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 수익률 증진 :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주2) 증권의 차입 :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 분	내 용	예외
이해관계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

인 투 자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동일종목 투 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시행령 제 80 조제 3 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 69 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각목의 금융 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 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 31 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 기관에 금전을 대여 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 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로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 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개월간 적용한다.	최초설정일로부터1개월간
동일법인 투 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집합투자증권 투 자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최초설정일로부터1개월간
	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이내에서 법시행령 제 80 조제 10 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마.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제 234 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총수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발행증권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

* 투자제한 및 투자제한 예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집합투자규약 및 제 2 부 투자대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편입한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 국공채, 우량 회사채(AA- 이상), 기업어음(A1 이상)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고, 국내 고배당주식에 투자하여 배당수익과 자본수익을 동시에 추구 합니다.

구분	편입자산	편입비중(예상)	목표
채권	국공채 우량회사채 (AA- 이상) 기업어음 (A1 이상)	60% 이상	안정적 이자수익 추구
주식	배당성장 기업 1) 이익증가 비례하여 배당 성장 2) 실적 증가 혹은 양호한 현금흐름 3)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소각	40% 이하	기업가치 Re-Rating 배당+자본이익 동시 추구

	4) 투자사이클 종료 및 회수기 도래		
	고배당 기업 배당수익을 꾸준히 창출하는 기업을 선별하여 배당이익 추구		

<세부 운용전략>

① 채권운용전략

- 국공채 및 우량회사채 위주 투자

• 국공채 및 우량회사채(AA- 이상)에 투자하여 보유수익률 제고
• 기업어음(A1 이상)에 투자
• 펀더멘탈 대비 금리 매력도가 높은 자산 위주로 편입
• 안정적 듀레이션 운용을 통해 펀드 수익률 변동성을 축소

- 전문적 신용위험 관리

• 전담 Credit Analyst의 상시 Monitoring으로 보수적인 투자 Universe관리
• 당사 개발한 HK Credit Grouping System 활용을 통한 정량적 분석 수행
• 투자종목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사전적 관리 및 선제적 대응

- 초과수익 추구

• 심층적인 종목 분석을 통해 신용등급 상향 예상 종목 선제적 투자
• 만기별 스프레드 분석을 통해 Rolling Effect 가 큰 구간 투자
• 동일 종목 내 만기별 스프레드 교체 투자, 동일 업종 내 종목간 스프레드 교체 투자전략 활용

② 주식운용전략

- Value-Up 프로그램에 따른 수혜기업에 투자

• 적정 수준 이상의 ROE와 주주환원율 보유한 기업 및 향후 개선 기업
• 효율적 자본 재배치 기업 / 기업가치 상승기반을 확보한 기업

- 주주 환원에 적극적인 기업에 투자

• 배당가능재원의 원천인 영업이익 증가 또는 양호한 현금흐름 보유한 기업
• 시장 평균 이상의 고배당 /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소각 대상 기업
• 일관성 있고 명확한 주주 환원 정책을 보유한 기업

- 고배당 TOP10 집중 투자

• 매년 높은 수준의 배당을 꾸준히 실시하는 상위 10개 우량기업에 집중 투자
• 특정 산업 / 특정 종목에 편중을 지양하는 분산 투자

투자가능 종목 스크리닝	▷ 시가총액 1천억원 이상 ▷ 20일 일평균 거래대금 15억 이상 ▷ 배당수익률 3% 이상
20개 기업 선별	▷ 배당수익률 ▷ 주주환원 지속가능성 ▷ 실적 안정성 ▷ 재무구조 우위 고려
최종 TOP10 기업 선별	▷ 시가총액 규모

	▷ 유동성 ▷ 배당수익률 ▷ 업종배분 고려

* 종목 리밸런싱 기간에는 종목 수가 일시적으로 초과, 미달될 수 있습니다. 상기 투자가능종목 스크리닝기준 등 세부 투자전략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종 TOP10 포트폴리오 구성(예시) (2025.3.20 기준, 단위: 억원, 배)

종목명	업종	시가총액	순이익	ROE	PBR	배당수익률	부채비율
			2024	2024	2024	2024	2024
A	자동차	415,691	125,267	12%	0.49	6%	183%
B	내수소비재	12,763	3,333	12%	0.54	6%	32%
C	음식료&담배	115,959	11,657	13%	1.16	6%	49%
D	지주	36,900	5,670	4%	0.26	7%	90%
E	통신	123,743	5,033	3%	0.74	4%	133%
F	유틸리티	19,575	1,724	13%	1.47	6%	27%
G	은행	172,632	37,388	9%	0.44	6%	1,364%
H	증권	40,230	8,990	12%	0.61	8%	750%
I	보험	15,703	2,851	8%	0.46	6%	280%
J	기타금융	52,586	3,480	10%	1.54	7%	12%

* 상기 자료는 단순 예시자료로 해당 종목에 대한 투자를 확정 또는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상기 투자전략 및 투자대상 종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간 및 기말 배당 예상치 취합 이후 매년 12월~1월, 6~7월 중 정기 리밸런싱을 진행할 예정이며, 그 외에도 시장 상황 및 발행회사 이슈 발생 등에 따라 수시 리밸런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리밸런싱 기간에는 종목수가 일시적으로 초과, 미달될 수 있습니다.

2)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위험관리를 위하여 각종 시장 지표의 모니터링과 분석으로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사전 또는 사후에 인식 및 평가하고, 위험관리와 관련한 긴급&중요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위험관리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동성리스크에 대한 비상조치계획]

- 이 투자신탁은 유동성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펀드에 적정 유동성비율을 유지하며, 펀드 환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채권 및 주식편입비율 및 유동성 비율을 조절할 예정입니다.
- 급격한 시장상황 악화, 대량환매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태 발생(금융사고 포함)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위기관리대책(Contingency Plan)을 위험관리기준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 위기관리대책은 위험관리책임자가 작성한 기본계획을 근거로 관련업무부서장이 세부계획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수립합니다.
- 펀드 유동성 부족 위기상황에 대한 위기국면 및 대응은 아래 4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 초기국면 : 원인분석 및 모니터링 실시(운용본부)
  2. 진행국면 : 유동성 확보방안 마련 및 모니터링 강화(운용본부, 위험관리실, 준법감시실, 마케팅본부)
  3. 비상국면 : 환매연기 및 만기연장 검토, 판매사/수익자 통지,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소집, 감독원 보고 등(위험관리실무위원회)

4. 해소국면 : 업무정상화를 위한 준비상황 점검 등

- 위험관리책임자는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상기에서 정한 위기등급의 상황발령을 행합니다.
- 대표이사는 위기관리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비상대책반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비상대책반 구성
  1. 반장 : 해당 위기상황과 직접적인 업무관련이 있는 담당임원
  2. 반원 : 반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팀장급 이상의 직원
- 비상대책반의 업무
  1. 위기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
  2. 위기대응에 필요한 세부시행방안의 수립 및 실행
  3. 관련부서와의 업무분담 및 협조체계 유지
  4. 기타 위기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위기대응은 신속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조기에 위기상황을 해소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둡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전사적인 역량을 모아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험관리책임자는 위기대응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합니다.
- 위험관리책임자는 사전적으로 특정한 상황을 가정하여 위기국면별 세부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1. 위기국면별 우선조치 사항
  2. 사업부서별 필요조치사항 및 실행방안
  3. 판매사 등 고객 대응방안
  4. 기타 필요한 사항
- 위험관리책임자는 위기상황의 해소 후 위기관리대책의 개선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이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KOBI(Korea Bond Index)120*60% + KOSPI고배당50*40%

-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채권에 주로 투자하므로, KOBI120 지수를 60% 비중으로 적용하고, 우량 중소형 종목 중심으로 높은 배당수익률을 추구하는 KOSPI고배당50 지수를 40% 비중으로 비교지수를 선정하였습니다.
- KOBI120 지수는 Index Fund의 합리적 운용 및 중기 성과평가를 위해 잔존 만기 3년 이하의 투자가능 채권 120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듀레이션은 1.0년 수준입니다.
- KOSPI고배당50 지수는 우량 중소형 종목 중심으로 높은 배당수익률을 추구하며, 개인투자자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는 지수로서, 유가증권시장 상장종목 중에서 배당수익률이 높은 50 종목을 선정하여 2014년 10월 27일부터 산출하고 있습니다. 지수산출은 배당수익률이 높은 순서로 편입비중이 결정되는 배당수익률 가중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시장상황,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 등에 따라 비교지수는 추가될 수 있으며,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상기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상기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현재의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으로 시장상황의 변동이나 당사 내부 기준의 변경 또는 기타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내용은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 채권에 투자하고, 40% 이하로 주식에 투자합니다. 따라서 채권의 이자수익과 가격변동 및 주식의 가치변동에 의해 이익 및 손실이 발생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아래 투자위험은 본 자료 작성시점 현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시장 위험 및 개별 자산 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주식 및 채권 등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 등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주식 및 장내파생상품 등의 가격변동에 의해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 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하여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발행자의 신용등급이 낮아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지급하는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신용등급이 높은 채권에 비하여 이자율 변동 시 가격변동폭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및 부도위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증권 등의 발행회사 또는 단기금융상품 거래상대방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거나 신용도 하락, 채무불이행, 부도 등 신용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 주요내용
특정 주식 집중투자위험	이 투자 신탁은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주식) 투자 시 10개 종목을 선별하여 집중투자를 하기 때문에, 더 광범위하게 배당주를 분산 투자하는, 다른 채권혼합형 투자신탁상품에 비해 운용성과 변동의 폭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배당주형 펀드 투자 위험	배당주에 투자하는 펀드에는 여러 가지 잠재적인 위험이 존재합니다. 기업의 경영 실적 저하, 이익 감소, 또는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예상된 배당금이 축소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펀드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장성이 기대되는 기업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주가 하락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고배당을

	유지하던 기업이 재무 건전성 약화나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해 배당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위험도 있습니다. 금리 상승 시 고배당주의 투자 매력도는 감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보다 안전한 자산으로 이동하면서 펀드의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울러, 일부 국내 주식의 낮은 유동성으로 인해 매매가 어려울 수 있으며, 특정 업종이나 기업에 집중된 투자는 해당 기업 또는 업종의 변동성이 펀드 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 주요내용
유동성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투자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공모주 포함)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환매중 재산가치변동 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 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 됩니다. 이로 인하여 실제 환매 대금은 환매청구일의 예상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규모 변동에 따른 위험	투자신탁의 규모가 환매 등에 의해 일정 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이 투자신탁을 운용함에 있어 원활한 분산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자산에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이 투자신탁의 성과 및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이 투자신탁은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유로 인해 환매가 연기 혹은 일정기간 제한 될 수 있습니다. 1. 집합투자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나. 증권시장이나 해외증권시장의 폐쇄, 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 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다. 대량의 환매 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3. 환매를 청구 받거나 요구 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회사 등이 해산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금융위원회가 환매 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등
투자신탁 해지 위험	투자신탁을 설정한 이후 1 년(법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 년(법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의 동의 없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변경 위험	이 투자신탁이 최초설정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총회 또는 다른 방식의 투자자 동의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흥국멀티크레딧증권모투자신탁[채권]"의 자투자신탁으로 자동 전환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이내에 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중 처리방안을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되므로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증권대차거래 위험	이 투자신탁은 초과수익 전략의 일환으로 증권대차거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권대차거래는 거래상대방에게 증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거래로 시장상황에 따라 이러한 거래로 인해 거래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권대차거래 이후, 중개회사 또는 거래상대방의 시스템, 운영오류나 거래상대방의 파산 등으로 인해 대차증권의 상환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미상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권대차거래를 위해 담보로 제공된 증권의 가치가 중개회사 또는 거래상대방에서 정한 담보비율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추가담보를 납입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 투자신탁의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타 위험	이 투자신탁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 등에 따라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환매연기 또는 일정기간 환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분류에 속하지 않거나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성과 및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투자신탁 위험등급을 매우 높은 위험(1 등급)에서 매우 낮은 위험(6 등급)까지 6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설정일 이후 3 년이 경과된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실제 수익률 변동성'에 따라 위험등급이 결정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기준에 의해 6 등급 중 **4 등급(보통위험)**에 해당되는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 채권에 투자하고, 40% 이하로 주식에 투자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채권 및 주식투자의 위험수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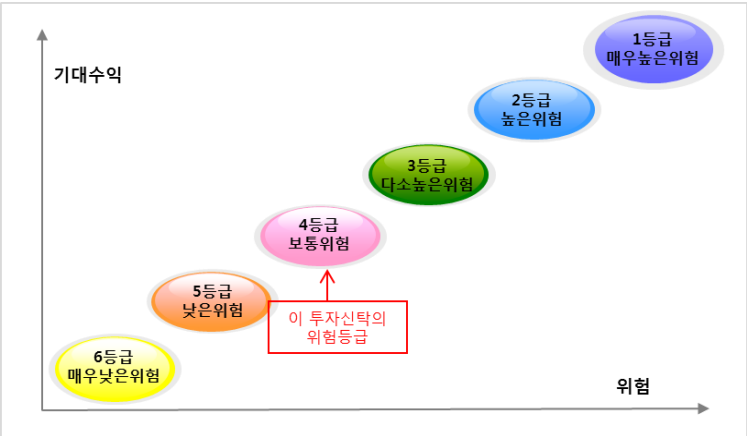

※ 상기 위험등급분류는 설정 후 3년이 경과시 실제 수익률 변동성으로 등급분류 기준이 변경되면서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흥국자산운용 집합투자증권 위험등급 분류기준(운용기간 3년 미만인 경우)

위험등급	분류기준	내 용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 위험*	-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 위험*	-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사채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중위험자산"은 채권(BBB- 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해외투자펀드는 국내펀드 분류기준을 준용하되 환헤지여부·투자국가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위험등급을 조정함
- 위에 명시되지 않은 펀드의 위험 등급은 투자대상·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정함
- 설정된 후 3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수익률 변동성(예 :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구분합니다. 따라서, 설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는 추후 실제 수익률 변동성으로 등급분류기준이 변경되면서 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당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인 흥국자산운용의 내부기준입니다. 따라서, 판매회사의 분류등급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등급 기준표(97.5% VaR 모형* 사용) (운용기간 3년 경과한 경우)

위험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매우높은위험	높은위험	다소높은위험	보통위험	낮은위험	매우낮은위험
97.5% VaR	50%초과	50%이하	30%이하	20%이하	10%이하	1%이하

* 과거 3년 일간 수익률에서 2.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250)를 곱해 산출
* VaR(Value at Risk)는 포트폴리오 손실 위험 측정을 위해 이용되는 위험 측정수단입니다. 상기 표상 VaR 값 OO%의 의미는 펀드의 과거 3 년 동안 일간수익률을 고려 시 최대 OO%의 손실(신뢰구간 97.5%)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이 집합투자기구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Class 구분	가입자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선취판매수수료가 납입금액의 100분의 0.5이내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선취-온라인(A-e)	온라인판매 전용으로 선취판매수수료가 납입금액의 100분의 0.25이내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제한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온라인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기관,펀드 등(C-f)	-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 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투자자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 변액보험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랩,금전신탁(C-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및 특정금전신탁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개인연금(C-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 -개인연금(C-pe)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중 온라인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퇴직연금(C-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사용자 및 가입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 -퇴직연금(C-p2e)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사용자 및 가입자 중 온라인 투자자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 -개인연금(S-p)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 -퇴직연금(S-pr)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사용자 및 가입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수익증권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① **15시30분[오후3시30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2영업일(D+1)**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② **15 시 30 분[오후 3 시 30 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 영업일(D+2)**에 공고 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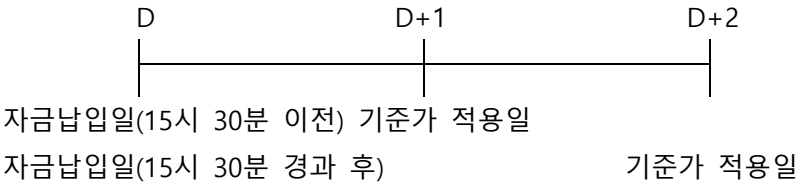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③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환매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환매가 가능한 경우, 온라인을 통한 환매청구도 가능합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① **15시30분[오후3시30분] 이전**에 환매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4영업일(D+3)**에 환매대금 지급

② **15시30분[오후3시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4영업일(D+3)**에 환매대금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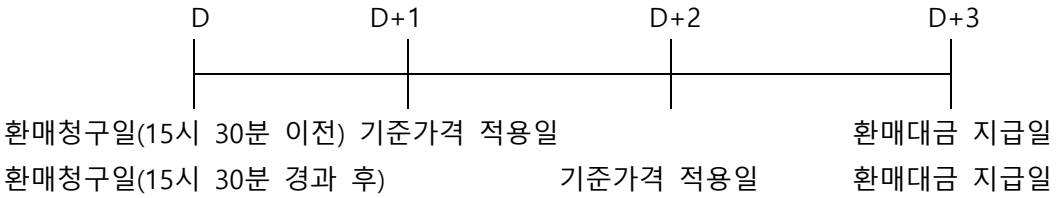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3)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5)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5 시 30 분[오후 3 시 30 분]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 시 30 분[오후 3 시 30 분]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6)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7)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2 영업일전일(15 시 30 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영업일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8)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환매연기사유
①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②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④①내지③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9)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집합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10) 환매 가능 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

중도환매불가	중도환매시 비용 발생	중도환매 허용
-	-	O

다. 전 환 : 해당사항 없음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주요 내용
산정방법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 전체에 대한 기준가격 및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며, 산정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합니다.
공시시기	집합투자업자는 통보받은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회사 및 판매회사를 통해 매일 공시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에 공고게시, 집합투자업자(www.hkfund.co.kr)·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주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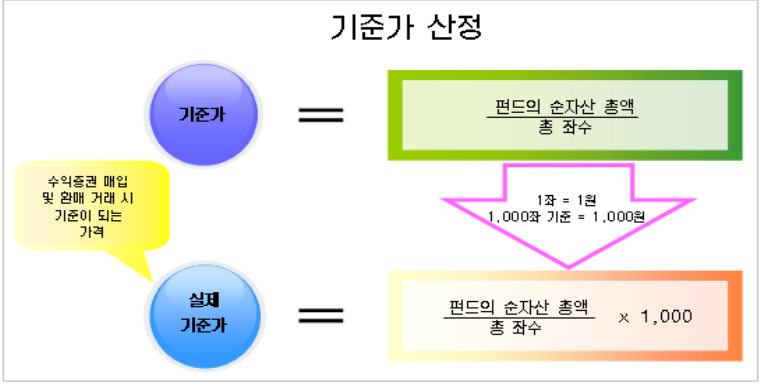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국내상장주식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다만, 평가기준일의 최종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거래가 있었던 최근일의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등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상장채무증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채무증권 및 기타채무증권 등	비상장채권(제 10 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무증권 포함), 기업어음 및 양도성정기예금증서 등 비상장채무증권과 유사한 증권 등은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한, 증권시장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평가기준일의 최종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거래가 있었던 최근일의 최종시가)

2)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업무 등

구분	주요내용
구성	1. 위원장 : 대표이사 2. 위원 : 평가업무 담당 임원, 운용업무 담당 임원,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기타 위원장이 지명한 자
업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1. 집합투자재산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 2. 실물자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부도채권 등 부실자산의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출자전환 주식 등 시장 매각에 제한이 있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의 공정가액 산정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의 선정 및 변경과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7. 집합투자재산 평가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8. 부동산 및 특별자산펀드의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주기적 공정가액 산정에 관한 사항 9. 집합투자재산 평가기준의 개정에 관한 사항 10. 기타 관련법규 및 집합투자규약 등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관련법규 및 집합투자규약에 의해 위임된 사항으로서 집합투자재산의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 이 집합투자기구는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 류	가 입 자 격	수수료율			
		선취판매 수수료	후취판매 수수료	환매 수수료	전환 수수료
수수료선취 -오프라인(A)	선취판매수수료가 납입금액의 100분의 0.5이내 징구되는 수익증권	납입금액의 0.5%이내	-	-	-
수수료선취 -온라인(A-e)	온라인판매 전용으로 선취판매수수료가 납입금액의 100분의 0.25이내 징구되는 수익증권	납입금액의 0.25%이내	-	-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C)	제한없음	-	-	-	-
수수료미징구 -온라인(C-e)	온라인 투자자	-	-	-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기관,펀드 등 (C-f)	-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 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투자자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 변액보험	-	-	-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랩,금전신탁 (C-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및 특정금전신탁	-	-	-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개인연금(C-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	-	-	-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개인연금(C-pe)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중 온라인 투자자	-	-	-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C-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사용자 및 가입자	-	-	-	-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퇴직연금(C-p2e)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사용자 및 가입자 중 온라인 투자자	-	-	-	-
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S)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수익증권	-	3년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	-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개인연금(S-p)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수익증권	-	-	-	-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퇴직연금(S-pr)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사용자 및 가입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수익증권	-	-	-	-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전환시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연, %)									
	집합투자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관리 보수	총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기타비용	총보수·비용	합성 총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증권거래비용
수수료선취 -오프라인(A)	0.3000	0.4000	0.0200	0.0120	0.7320	0.7700	0.0022	0.7342	0.7442	0.2206
수수료선취 -온라인(A-e)	0.3000	0.2000	0.0200	0.0120	0.5320	0.5600	0.0022	0.5342	0.5446	0.2255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C)	0.3000	0.7000	0.0200	0.0120	1.0320	1.1500	0.0022	1.0342	1.0456	0.2304
수수료미징구 -온라인(C-e)	0.3000	0.3500	0.0200	0.0120	0.6820	0.7300	0.0022	0.6842	0.6956	0.2307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기관,펀드 등 (C-f)	0.3000	0.0300	0.0200	0.0120	0.3620	-	0.0020	0.3640	0.3721	0.2925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랩,금전신탁 (C-w)	0.3000	0.0000	0.0200	0.0120	0.3320	-	0.0000	0.3320	0.3320	0.0000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개인연금 (C-p)	0.3000	0.3000	0.0200	0.0120	0.6320	-	0.0000	0.6320	0.6498	0.2528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개인연금 (C-pe)	0.3000	0.1500	0.0200	0.0120	0.4820	-	0.0012	0.4832	0.4967	0.2382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 (C-p2)	0.3000	0.1800	0.0200	0.0120	0.5120	-	0.0000	0.5120	0.5230	0.2404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퇴직연금 (C-p2e)	0.3000	0.0900	0.0200	0.0120	0.4220	-	0.0022	0.4242	0.4365	0.2389
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 (S)	0.3000	0.1900	0.0200	0.0120	0.5220	-	0.0000	0.5220	0.5339	0.2754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0.3000	0.1400	0.0200	0.0120	0.4720	-	0.0000	0.4720	0.4880	0.2348

-개인연금 (S-p)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퇴직연금 (S-pr)	0.3000	0.0800	0.0200	0.0120	0.4120	-	0.0000	0.4120	0.4263	0.2490
지급시기	매3개월 후급					-	사유 발생시	사유 발생시/ 매3개월 후급	사유 발생시/ 매3개월 후급	사유 발생시

주 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3)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 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 4)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이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 5)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 관련 비용의 종류 및 내역

① 기타비용 종류 : 채권평가보수, 펀드평가보수, 펀드결제수수료, 지수사용료, 감사보수, 기타위탁보수(보관대리인보수, 지급대리인보수), 대차거래비용(대차관련수수료), repo거래비용(repo 수수료), 기타비용(해외거래예탁비용, 해외원천납부세액) 등 (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음)

② 증권거래비용 종류 : 주식·채권·수익증권·파생상품·기타 증권 등 자산매매수수료 등 (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음)

③ 금융비용 종류 : 상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제외한 이자비용 등이 있으며, 금융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 천원)

클래스(종류)	투자기간	1 년	2 년	3 년	5 년	10 년
수수료선취 -오프라인(A)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25	202	281	446	929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26	204	285	452	941
수수료선취 -온라인(A-e)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80	136	193	313	665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81	138	197	319	677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C)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03	212	326	571	1,301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05	214	330	578	1,315
수수료미징구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68	140	216	378	861

-온라인(C-e)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70	143	219	384	875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기관,펀드 등(C-f)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36	75	115	201	458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37	76	117	206	468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랩,금전신탁(C-w)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34	69	105	179	398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34	69	105	179	398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개인연금(C-p)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63	130	199	349	795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65	133	205	359	817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개인연금(C-pe)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48	99	152	267	608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50	102	157	274	625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C-p2)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51	105	161	283	644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52	107	165	289	658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퇴직연금(C-p2e)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42	87	134	234	534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44	89	138	241	549
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S)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52	107	165	288	657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53	109	168	295	672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개인연금(S-p)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47	97	149	261	594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49	100	154	270	614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퇴직연금(S-pr)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41	84	130	228	518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43	87	134	236	536

주 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적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2) 종류 S 수익증권의 경우 3년 이상 보유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 보수 및 지급내역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1)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자와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 설정 이후 매년 결산, 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 배당소득 등은 매년 결산, 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 분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거나 현금으로 분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금 등의 지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환금 등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기간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수익자가 상환금 등의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5)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5년 1월 1일 이후 투자신탁에서 외국납부세액 발생시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외국납부세액 환급 절차가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판매회사 등)가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기구 이익 지급 시 수익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수익자별 외국납부세액 공제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 합니다.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양도(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함)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매매・평가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 이자, 주식 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일반법인 15.4% (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자, 배당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 (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4) 종류C-p, 종류C-pe, 종류S-p 수익증권 가입자 :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 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1. 연간 1,800만원 2.「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 1.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 -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500만원 이하)는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6.5%(지방소득세 포함)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 금액이 있는 경우 전환 금액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 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처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중 적은 금액 단, 연금저축계좌 새액공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 분 기준 한도로 작성되었습니다.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 (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연금소득분리과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금소득 1.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2.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연금소득 3. 1호 및 2호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5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단, 연간 1,5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선택가능 (2024년 1월 1일 이후 연금 수령분부터 적용)
연금외수령시 과세 (통상적인 경우)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해지가산세	없음
연금외수령시 부득이한 경우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 필요 시 -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 결의, 파산선고
연금외수령시 과세 (부득이한 경우)	연금소득세 5.5~3.3% (나이에 따라 변경, 분리과세)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종류C-p2, 종류C-P2e, 종류S-pr 수익증권 가입자 :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구분	주요 내용
세액공제	근로자의 추가부담금은 연금저축과 합산(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최대 600만원 이내의 금액)하여 연간 900만원 한도까지 13.2%(또는 16.5% 지방소득세 포함) 세액 공제 단, 퇴직연금계좌 세액공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 분 기준 한도로 작성되었습니다.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 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아니하고, 연금 수령 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
과세체계 다양성	퇴직연금 수령방법(연금인출, 연금외인출 등 인출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르게 결정

※ 퇴직연금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준가격 및 과표기준가격에 관한 사항

기준가격은 투자원금에 운용성과를 반영하여 산정되는 가격으로서 수익증권의 매입 및 환매 시 적용됩니다.

한편, 과표기준가격은 투자원금에 과세대상 자산에서 발생한 운용성과만을 반영하여 산정되며, 환매 또는 이익분배 시 수익자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에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비과세대상 자산에서 발생한 손실은 과표기준가격 산정 시 반영되지 않으므로, 기준가격 기준으로 투자손익이 손실인 경우에도 수익자에게 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표기준가격은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집합투자기구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1기(2025.06.25 ~ 2026.06.24)	삼덕회계법인	적정

가. 요약재무제표

흥국고배당TOP10증권[채권혼합] [단위 : 원]

요약재무상태표			
항 목	제 1 기		
	2026.06.24		
운용자산	32,699,428,860		
유가증권	31,685,264,180		
파생상품	0		
부동산/실물자산	0		
현금 및 예치금	1,014,164,680		
기타 운용자산	0		
기타자산	108,084,890		
자산총계	32,807,513,750		
운용부채	2,700,188,630		
기타부채	1,565,725,440		
부채총계	4,265,914,070		
원본	25,505,482,761		
수익조정금	0		
이익조정금	3,036,116,919		
자본총계	28,541,599,680		

흥국고배당TOP10증권[채권혼합] [단위 : 원, %]

요약손익계산서			
항 목	제 1 기		
	2026.06.24		
운용수익	2,572,143,352		
이자수익	348,388,769		
배당수익	612,898,786		
매매평가차손익	1,493,978,874		
기타수익	116,876,923		
운용비용	31,297,482		
관련회사보수	0		
매매수수료	358,905		

기타비용	30,938,577		
당기순이익	2,540,845,870		
매매회전율	269.52		

※ 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는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타수익에는 증권대여에 따른 수수료 수익 등이 포함(1기 0원)
기타비용에는 증권차입에 따른 수수료 비용 등이 포함(1기 0원)

1) 주식의 매매회전율 [단위 : 주, 원, %]

매매회전율						
주식 매수		주식 매도		당해연도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B)	매매회전율 (A/B)	동종 유형 평균 매매 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A)			
790,381	28,383,149,958	497,222	19,212,674,680	7,128,489,878	269.52	32.37

주 1) 동종유형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및 일반 공모집합투자기구로 구분하여 법 제229조에 따른 5가지 종류의 유형(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제외)을 의미합니다.

2)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단위 : 원, %]

자산유형별 거래비용						
구분	당해 연도			전년도		
	거래금액(A)	거래비용		거래금액(A)	거래비용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주식	47,595,824,638	42,697,097	0.09	-	-	-
주식 이외의 증권	35,487,067,455	1,143,010	0.00	-	-	-
기타(레포, 대차,콜 등)	554,329,075,861	358,905	0.00	-	-	-
합 계	637,411,967,954	44,199,012	0.01	-	-	-

주 1) 주식 중개수수료 등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기재하되, 장외 채권거래와 같이 별도 수수료 미발생 등의 사유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인 산출이 어렵거나 부동산 등과 같이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수익적 지출 등 비용으로 산정되는 항목은 기재)은 작성을 생략합니다.

나. 재무상태표

흥국고배당TOP10증권[채권혼합] [단위 : 원]

재무상태표

항 목	제 1 기		
	2026.06.24		
운용자산	32,699,428,860		
현금및예치금	1,014,164,680		
현금및현금성자산	1,014,164,680		
유가증권	31,685,264,180		
지분증권	10,927,747,800		
채무증권	20,757,516,380		
기타자산	108,084,890		
미수이자	82,264,096		
미수배당금	10,206,000		
선급비용	15,614,794		
자 산 총 계	32,807,513,750		
운용부채	2,700,188,630		
환매조건부채권매도	2,700,188,630		
기타부채	1,565,725,440		
해지미지급금	417,693,269		
수수료미지급금	1,462,094		
미지급이익분배금	1,146,570,077		
부 채 총 계	4,265,914,070		
원 본	25,505,482,761		
이익잉여금	3,036,116,919		
자 본 총 계	28,541,599,680		
부채 및 자본 총계	32,807,513,750		
총좌수	25,505,482,761		
기준가격	1119.04		

다. 손익계산서

흥국고배당TOP10증권[채권혼합] [단위 : 원]

손익계산서			
항 목	제 1 기		
	2025.06.25 ~ 2026.06.24		
운용수익(운용손실)	2,572,143,352		
투자수익	961,287,555		
이자수익	348,388,769		
배당금수익	612,898,786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2,624,850,856		
지분증권매매차익	1,833,712,995		
채무증권매매차익	38,172,458		
지분증권평가차익	752,965,40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1,130,871,982		
지분증권매매차손	545,814,476		

채무증권매매차손	32,866,178		
지분증권평가차손	385,481,632		
채무증권평가차손	166,709,696		
기타운용수익	116,876,923		
운용비용	31,297,482		
매매수수료	358,905		
이자비용	28,857,947		
기타운용비용	2,080,630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2,540,845,870		
좌당순이익(좌당순손실)	149.83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흥국고배당TOP10증권[채권혼합] [단위:백만좌,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5/06/25~2026/06/24	1,001	1,001	51,215	56,033	25,710	28,885	25,505	29,688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흥국고배당TOP10증권[채권혼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단위:백만좌,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5/06/25~2026/06/24	0	0	12,394	13,394	7,863	8,557	4,531	5,236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흥국고배당TOP10증권[채권혼합] 수수료선취-온라인(A-e) [단위:백만좌,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5/06/25~2026/06/24	0	0	6,807	7,374	2,346	2,636	4,461	5,166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흥국고배당TOP10증권[채권혼합]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단위:백만좌,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5/06/25~2026/06/24	0	0	11,286	12,294	5,074	5,733	6,212	7,158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흥국고배당TOP10증권[채권혼합]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단위:백만좌,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 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 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 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 수)	금액
2025/06/25~2026/06/24	0	0	9,855	10,871	5,731	6,427	4,124	4,768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흥국고배당TOP10증권[채권혼합]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펀드 등(C-f) [단위:백만좌,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 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 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 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 수)	금액
2025/06/25~2026/06/24	1,000	1,000	1,000	1,000	0	0	1,000	1,160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흥국고배당TOP10증권[채권혼합]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단위:백만좌,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 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 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 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 수)	금액
2025/06/25~2026/06/24	0	0	101	114	101	119	0	0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흥국고배당TOP10증권[채권혼합]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단위:백만좌,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 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 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 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 수)	금액
2025/06/25~2026/06/24	0	0	751	860	515	602	236	273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흥국고배당TOP10증권[채권혼합]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단위:백만좌,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 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 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 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 수)	금액
2025/11/06~2026/06/24	0	0	0	0	0	0	0	0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흥국고배당TOP10증권[채권혼합]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단위:백만좌,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	금액	좌수 (출자지분	금액	좌수 (출자지분	금액	좌수 (출자지분	금액

	수)		수)		수)		수)	
2025/07/29~2026/06/24	20	20	9,220	10,102	4,123	4,707	5,096	5,877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흥국고배당TOP10증권[채권혼합]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단위:백만좌,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6/02/06~2026/06/24	0	0	21	21	19	20	1	1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흥국고배당TOP10증권[채권혼합]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단위:백만좌,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6/02/06~2026/06/24	0	0	1	1	0	0	1	1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흥국고배당TOP10증권[채권혼합]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r) [단위:백만좌,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6/02/12~2026/06/24	0	0	1	1	0	0	1	1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 [단위: %]

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025/06/25 ~ 2026/06/24	-	-	-	
흥국고배당 TOP10 증권 [채권혼합]	16.40	-	-	-	16.40
비교지수	9.37	-	-	-	9.37
수익률변동성	9.07	-	-	-	9.15
수수료선취 -오프라인(A)	15.56	-	-	-	15.56

비교지수	9.37	-	-	-	9.37
수수료선취 -온라인(A-e)	15.80	-	-	-	15.80
비교지수	9.37	-	-	-	9.37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C)	15.23	-	-	-	15.23
비교지수	9.37	-	-	-	9.37
수수료미징구 -온라인(C-e)	15.62	-	-	-	15.62
비교지수	9.37	-	-	-	9.37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기관,펀드 등 (C-f)	15.98	-	-	-	15.98
비교지수	9.37	-	-	-	9.37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개인연금(C-p)	16.17	-	-	-	16.17
비교지수	9.37	-	-	-	9.37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개인연금 (C-pe)	15.86	-	-	-	15.86
비교지수	9.37	-	-	-	9.37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 (C-p2)	-	-	-	-	23.75
비교지수	-	-	-	-	12.44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퇴직연금 (C-p2e)	-	-	-	-	16.89
비교지수	-	-	-	-	8.74
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S)	-	-	-	-	10.43
비교지수	-	-	-	-	-5.37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개인연금(S-p)	-	-	-	-	10.54
비교지수	-	-	-	-	-5.37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퇴직연금(S-pr)	-	-	-	-	2.62
비교지수	-	-	-	-	-12.18

주 1) 비교지수 : KOBI(Korea Bond Index)120*60% + KOSPI 고배당 50*40%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4)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설정일 이후 기간은 최초 설정된 종류 수익증권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따라서, 그이후 설정된 다른 종류 수익증권의 기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 5)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아니합니다.

주 6)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를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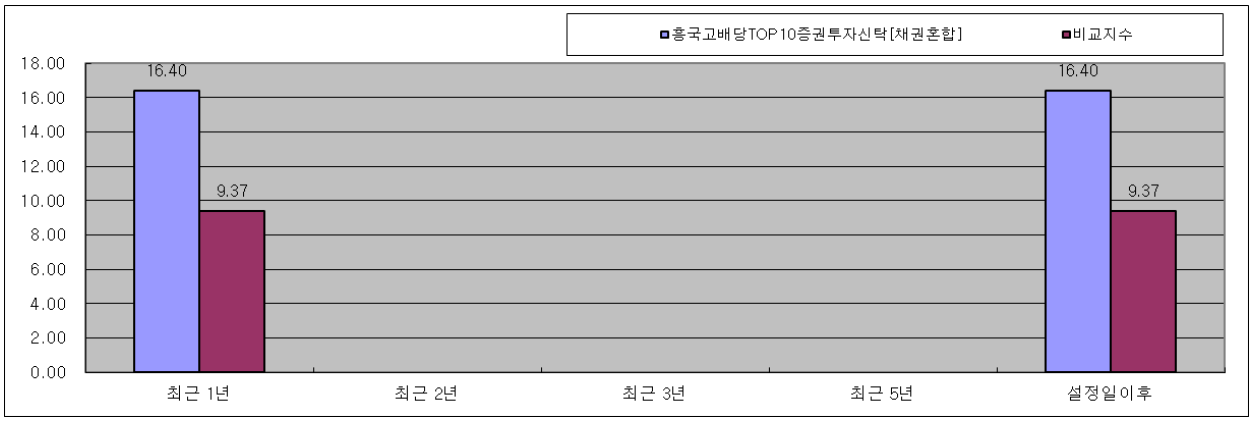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단위: %]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2025/06/25 ~ 2026/06/24	-	-	-	-
흥국고배당 TOP10 증권 [채권혼합]	16.40	-	-	-	-
비교지수	9.37	-	-	-	-
수수료선취 -오프라인(A)	15.56	-	-	-	-
비교지수	9.37	-	-	-	-
수수료선취 -온라인(A-e)	15.80	-	-	-	-
비교지수	9.37	-	-	-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C)	15.23	-	-	-	-
비교지수	9.37	-	-	-	-
수수료미징구 -온라인(C-e)	15.62	-	-	-	-
비교지수	9.37	-	-	-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기관,펀드 등 (C-f)	15.98	-	-	-	-
비교지수	9.37	-	-	-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개인연금(C-p)	16.17	-	-	-	-
비교지수	9.37	-	-	-	-
수수료미징구	15.86	-	-	-	-

-온라인 -개인연금 (C-pe)					
비교지수	9.37	-	-	-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 (C-p2)	23.75	-	-	-	-
비교지수	12.44	-	-	-	-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퇴직연금 (C-p2e)	16.89	-	-	-	-
비교지수	8.74	-	-	-	-
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S)	-	-	-	-	-
비교지수	-	-	-	-	-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개인연금(S-p)	-	-	-	-	-
비교지수	-	-	-	-	-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퇴직연금(S-pr)	-	-	-	-	-
비교지수	-	-	-	-	-

주 1) 비교지수 : KOBI(Korea Bond Index)120*60% + KOSPI 고배당 50*40%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아니합니다.

주 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 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주 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 개월을 초과하고 1 년 미만인 경우(예:8 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 5)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 개월을 초과하고 1 년 미만인 경우(예:8 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 6)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 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7)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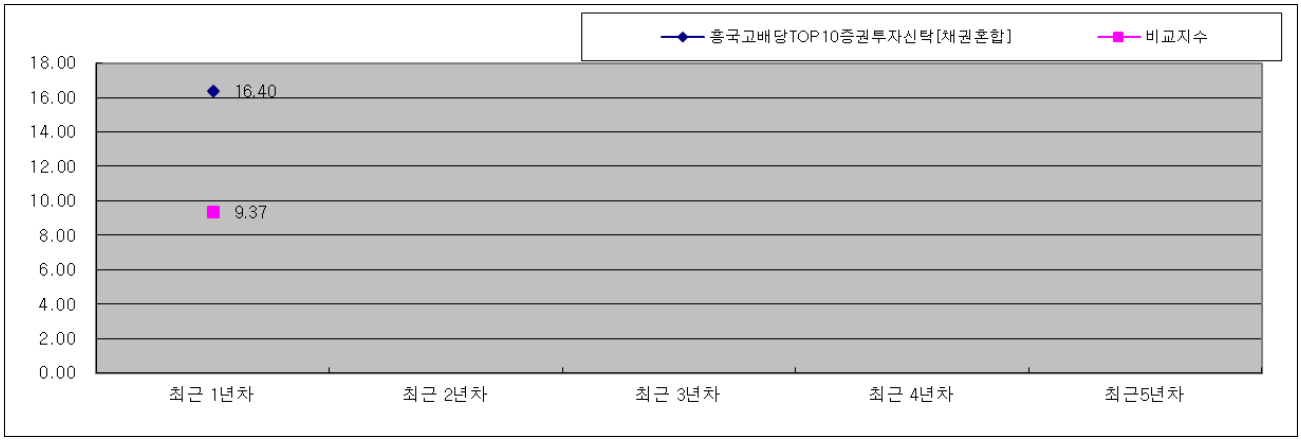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흥국고배당TOP1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2026.06.24 현재 / 단위 : 백만원,%]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등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대한민국 (KRW)	10,928	20,831	0	0	0	0	0	0	0	1,039	10	32,808
	(33.31)	(63.49)	(0.00)	(0.00)	(0.00)	(0.00)	(0.00)	(0.00)	(0.00)	(3.17)	(0.03)	(100.00)
자산합계	10,928	20,831	0	0	0	0	0	0	0	1,039	10	32,808
	(33.31)	(63.49)	(0.00)	(0.00)	(0.00)	(0.00)	(0.00)	(0.00)	(0.00)	(3.17)	(0.03)	(100.00)

(주 1)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

(주 2) 어음 등 : CD 및 어음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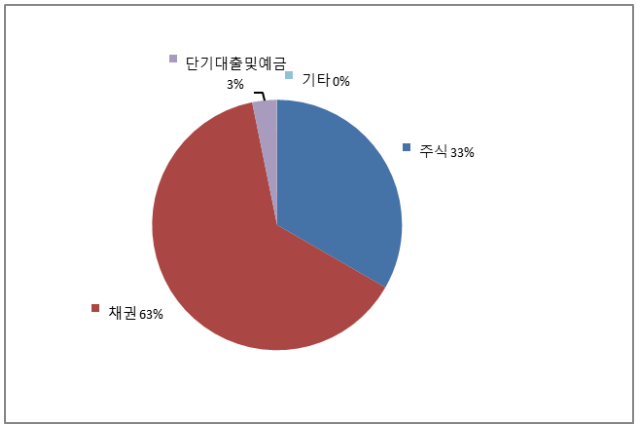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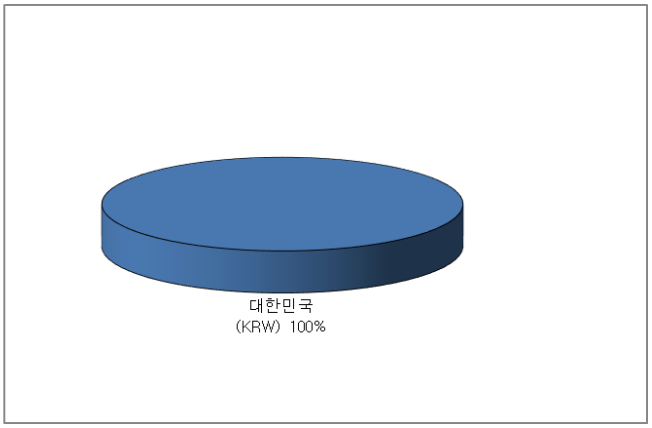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기구의 운용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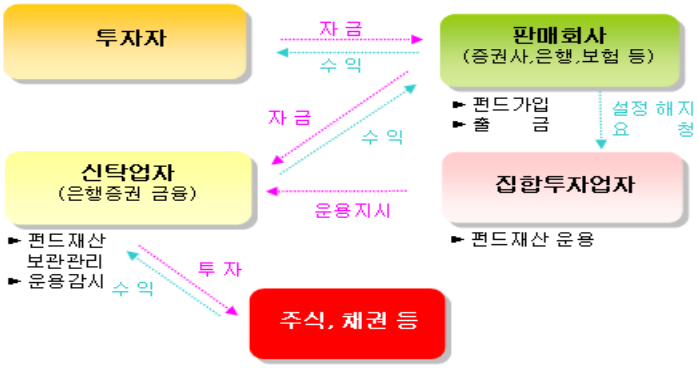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흥국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흥국생명빌딩 19 층 (연락처 : 02-2122-2800, www.hkfund.co.kr)
회사 연혁	- 1999.08.23 태광에셋투자자문주식회사 설립 - 2000.02.11 투자신탁운용업 허가 - 2000.02.16 태광투자신탁운용㈜로 상호변경 - 2000.06.19 자산운용업 허가 - 2006.03.20 흥국투자신탁운용㈜로 상호변경 - 2009.02.04 집합투자업 인가 - 2012.06.07 흥국자산운용㈜로 상호변경
자본금	100 억
주요주주현황	흥국증권(72.0%), 이호진(20.0%), 기타(8%)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①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②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

③ 투자회사재산의 운용

④ 그 밖에 법령이 정하는 업무

2) 집합투자업자의 의무와 책임

① 선관의무 :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② 책임 :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 백만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항 목	'25.12.31	'24.12.31	항 목	'25.12.31	'24.12.31
유동자산	25,447	26,161	영업수익	36,282	29,875
고정자산	39,450	29,742	영업비용	19,630	16,172
자산총계	64,897	55,903	영업이익	16,652	13,703
유동부채	7,442	4,484	영업외수익	2,396	24
고정부채	737	623	영업외비용	189	120
부채총계	8,179	5,107	경상이익	18,859	13,607
자본금	10,000	10,000	법인세비용	4,023	2,900
이익잉여금	46,718	40,796	당기순이익	14,836	10,707
자본총계	56,718	50,796			

라. 운용자산 규모

(2026.06.24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증권형					단기금융	파생형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기관전용 사모펀드	총 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투자계약	재간접형							
수탁고	2,927	3,508	72,229	-	1,705	50,464	8,530	4,186	25,135	4,264	-	172,952

주 1) 공·사모펀드 설정금액 기준(투자일임재산 제외)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중소기업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 (연락처 : 1588-2588)
회사연혁	홈페이지 참조 (https://www.ibk.co.kr)

2) 주요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금・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하는 신주의 수령
-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① 의무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1.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3.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4. 집합투자재산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5. 기준가격의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6.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하나펀드서비스(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10 층 (연락처 : 02-6714-4600)
회사연혁	홈페이지 참조 (www.hanais.com)

2) 주요업무

① 주요업무 :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②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해당사항 없음

라. 채권평가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자산평가(주)	KIS 자산평가(주)	NICE 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	EG 자산평가(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11 층(현대빌딩) (02-2251-13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대로 70 ONE CENTINEL 15 층 (02-3215-14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8 길 11(여의도동) 9 층 (02-398-3900)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 2 로 61(마곡동) (02-721-53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CCMM 빌딩 3 층 (02-785-1410)
회사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koreaap.com	www.bond.co.kr	www.nicepni.com	www.fnpricing.com	www.egap.co.kr

2) 주요업무 :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을 합니다.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 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종류형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함)한 것으로 봅니다.

가.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나.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다.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라.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수익자총회

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분할합병, 법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제외)
- 투자신탁의 합병(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제외)
-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 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 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분배
1)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수탁회사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며,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2)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1)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영업시간 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당해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2)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집합투자재산명세서
② 집합투자증권기준가격대장
③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④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3)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1)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집합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합니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수익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해당 주체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①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② 해당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③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⑤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⑥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⑦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이 집합투자규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2)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1)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아래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설정한 후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5) 이 투자신탁이 최초설정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총회 또는 다른 방식의 투자자 동의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흥국멀티크레딧증권모투자신탁[채권]"의 자투자신탁으로 자동 전환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3)및 4)의 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 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며, 동 규정에 의거 이 투자신탁을 임의로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①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 상황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표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② 결산서류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

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결산서류(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①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②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 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 또는 성립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 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
- 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내용
- 투자신탁의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 투자신탁의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
- 투자신탁의 업종별・국가별 투자내역
- 투자신탁의 결산 시 분배금 내역(결산 후 최초로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로 한정한다)
-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범위 상위 10개 종목
- 투자신탁의 구조.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 투자신탁이 환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그 거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①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발송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 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②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자산보관 ・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자산보관 ・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신탁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신탁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경우
-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③ 자산보관・관리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법 제247조제5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
-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
- 회계감사인의 선임, 교체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②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 :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모든 수익자에의 통지
-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 : 일간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1회 이상 공고

2) 수시공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 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 게시,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①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④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⑤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 및 이 영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 투자설명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⑥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⑦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법시행령 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⑧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⑨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이 설정 및 설립되고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⑩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⑪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 법 제 87 조제 2 항 및 제 3 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②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 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 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 월 30 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내용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위험지표의 공시 : 해당사항 없음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단위:백만원]

이해관계인		거래의 종류	자산의 분류	거래금액
성명(상호)	관계			
흥국증권	계열회사	중개거래	주식	7679.348185
흥국증권	계열회사	중개거래	채권	10672.953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기준

구분		선정 기준
증권	지분증권	리서치자료 제공 능력, 투자정보 제공 및 주문집행의 신속·정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중개업자를 평가·선정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투자중개업자별 배분계획을 수립하여 배분
	채무증권	정보제공 능력, 매매체력의 신속·정확성, 거래보안유지, 결제이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중개업자를 평가·선정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투자중개업자별 배분계획을 수립하여 배분
장내파생상품	증권의 거래와 유사	

주1) 해외 위탁운용사에 위탁하는 자산의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중개회사 선정은 해당 위탁운용사의 내부 기준에 따릅니다.
주2) 각 항목별 평가항목 등은 관련 법규 또는 당사 내부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1) 고유재산 투자

투자주체	흥국자산운용
투자목적	집합투자기구 운용에 대한 책임성 제고 및 신뢰확보를 위해 투자자, 집합투자업자간 집합투자기구 성과 공유장치 마련
투자승인일자	2025년 4월 24일
투자집행시기	최초 설정일
투자금액	2억원
투자기간	최초설정일로부터 최소 3년 이상. 다만, 3년 이전에 투자신탁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신탁계약서상 존속기한까지
투자금 회수계획	- 위의 투자기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2회 이상 분할하여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금이 펀드 수탁고의 5% 미만일 경우에는 일시 회수 가능함 - 분할 회수는 회차 별로 1개월 이상의 시차를 두며, 1회당 회수금액은 투자금의

	50% 이내로 함

주1)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금액은 상기의 의무투자금액 외 추가로 납입할 수 있으며, 추가로 납입한 금액은 의무투자기간 이전에 시장상황에 따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주2) 의무투자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당연 해지사유 발생
- 소규모 펀드로서 임의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
- 다른 모펀드의 자펀드로 편입(신규 설정 후 6개월이 되는 날 설정액이 15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다른 모펀드의 자펀드로 편입)되는 경우 또는 소규모 펀드 정리를 위해 모펀드를 교체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 다른 투자자의 전액 환매로 해지, 해산하는 경우
- 의무투자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펀드를 이전 받는 집합투자업자가 자사펀드 투자 의무를 승계
- 의무투자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계열사)가 중도 환매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자사펀드 투자 의무를 승계

주3) 집합투자업자가 자사펀드 투자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예정이며, 상기의 투자주체가 변경된 투자설명서가 공시될 예정입니다.
주4) 의무투자기간 종료 1개월 이전에 고유재산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산운용보고서에 기재하여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할 예정입니다.
주5)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내역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2) 고유재산 추가투자

투자주체	흥국자산운용
투자목적	향후 집합투자기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당사 고유재산의 투자가능한도 내에서 투자
투자승인일자	2025년 4월 24일
투자집행시기	최초 설정일
투자금액	8억원
투자기간	1년 이상 (고유자산의 유동성 및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환매할 예정)
투자금 회수계획	위의 투자기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2회 이상 분할하여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금이 펀드 수탁고의 5% 미만일 경우에는 일시 회수 가능함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해당사항 없음

[붙임] 용어풀이

용어	내용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 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수탁회사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집합투자업자	2 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받아 증권(주식, 채권 등)등에 투자·운용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신탁업자	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집합투자업자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작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집합투자업자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집합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할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집합투자기구)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급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 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 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설정	집합투자규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투신제도상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투신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익자총회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금융투자협회펀드코드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에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효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고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권자에게 사채 발행 이후에 기채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로서 주식옵션과 유사합니다.
기업공개	개인이나 소수의 주주에 의하여 설립되었던 회사가 일반 대중에게 회사의 주식을 매출하거나 모집하여 소유 지분을 개방하는 것입니다.
환헤지	해외펀드는 대부분 외화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계약 등을 이용하여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제거하는 환헷지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